

2026년도

**희귀질환 극복의 날 유공  
포상 계획(안)**

2026. 6.



**질병관리청**



# 목 차

<b>I. 포상 개요</b>	<b>1</b>
1. 목적	1
2. 기본 방향	1
3. 포상 계획(안)	2
<b>II. 포상대상자 추천</b>	<b>4</b>
1. 추천 대상	4
2. 훈격별 추천 기준	4
<b>III. 제출 방법 및 행정사항</b>	<b>5</b>
1. 후보자 추천 시 유의사항	5
2. 제출 서류	6
3. 제출처	7
[붙임1] 정부포상 심사 기준	8
[붙임2] 재포상 금지 및 포상 제한 규정	9



# I. 포상 개요

## 1 목적

- 희귀질환 극복의 날 유공 정부포상 신설('26.3월)에 따라, 일선 현장에서 희귀질환 관리와 극복 노력을 치하하기 위한 포상 실시
- 또한, 「제2차 희귀질환관리종합계획(2021~2026)」이 추진됨에 따라 그간의 성과와 노고를 격려하고자 함

### 「희귀질환관리법」 희귀질환 극복의 날 관련 조항

**제4조(희귀질환 극복의 날)** ① 희귀질환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희귀질환의 예방·치료 및 관리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매년 2월의 마지막 날을 희귀질환 극복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귀질환 극복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 희귀질환의 예방 및 조기 발견 등 희귀질환관리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26년 희귀질환 극복의 날 기념행사 개최('26.2월) 이후 '26년도 정부포상 신설에 따라, 금년도 희귀질환 극복의 날 유공자 포상은 당해연도 연말 행사 시 포상 예정

## 2 기본 방향

### □ 포상대상자 선정 원칙

- 희귀질환 극복에 기여한 각 분야의 유공자를 폭넓게 발굴·포함 되도록 하고, 희귀질환 관리에 앞장선 기관·단체 등도 적극 포상
- 국가 희귀질환 관리 정책 발전에 이바지하거나, 인식개선 및 교육·홍보에 기여하고, 희귀질환 관리 현안에 적극 대응한 자 적극 선정
- 희귀질환자 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온 일선 현장 업무 담당자 등 적극 발굴·추천
- 포상 기준은 「2026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추천 기준(수공기간, 재포상 금지 기간), 추천 제한사유 등 적용

## □ 포상적격자 선정을 위한 심사

-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포상 심사에 절차적 공정성, 객관성을 기함
  - \* 필요시 공적 내용에 대한 현장조사 및 사실조사 실시
- 각 기관·단체에서 추천한 대상자의 공적사항 등을 토대로 질병관리청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후 최종 훈격 및 포상대상자 결정
- 정부포상 추천대상자 명단, 공적개요 등을 누리집 등에 15일 이상 공개하여 의견 수렴 및 공개검증

## 3 포상 계획(안)

### □ 포상시기 및 규모

- (포상시기) 2026년 희귀질환 관리 심포지엄(가칭, '26.12월초)
- (포상규모(안)) : 총 8점 내외 (행안부 협의 후 최종 규모 확정)

구분	총계	정부포상			
		훈장	포장	대통령	국무총리
'26년(신설)	8	1	1	3	3

\* 포상 훈격 및 규모는 행정안전부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 추진일정(안)

6.15.~7.3.	8월	8~9월	10월	11~12월
후보자 추천 접수	포상 규모 협의	· 후보자 추천 제한 조회 및 공개검증 ·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 최종후보자 추천·제출	대상자 확정·통보
추천기관→질병청	질병청→행안부	질병청	질병청→행안부	행안부→질병청

- 관계기관, 학·협회 등에 후보자 추천 요청 및 접수(~7.3.)
- 정부포상 규모 협의(행안부, 8월~)
  - \* 행정안전부와 협의 후 포상 규모 및 훈격 최종 결정
- 후보자 추천 제한사유 조회\* 및 공개검증(8~9월)
  - \* 범죄·수사경력, 산업재해 명단공표, 불공정행위, 임금체불,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사회적 물의 야기 여부 등 엄밀히 조사
-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10~11월)
- 최종후보자 추천·제출(행안부) 및 정부포상 대상자 확정 통보(11월)
- 정부포상 수여 및 관보 게재(12월중)

## Ⅱ. 포상 대상자 추천

### 1 추천 대상

- 희귀질환 관리 분야 등에 뚜렷한 공로가 있고, 국가 정책 발전에 기여·헌신한 개인·단체
  - 희귀질환 진단 및 치료 분야에 기여하거나 희귀질환 극복을 위한 진단, 치료, 관리 기술개발 연구에 기여한 의료전문가 및 단체
  - 희귀질환자 의료 접근성 향상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진단, 치료, 상담, 교육에 기여하거나, 희귀질환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등에 기여한 지역사회 희귀질환 의료 전문가 및 단체
  - 희귀질환자 복지와 삶의 질 향상 등에 기여하거나, 희귀질환자의 안정된 치료여건 조성 등에 기여한 환우회 및 환자단체
  - 기타 희귀질환 극복에 기여한 일반인 및 산업체

### 2 훈격별 추천 기준

- '개인'은 모든 훈격에 추천 가능하나, '기관·단체'는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만 추천 가능
  - 훈·포장은 '장기간 뛰어난 공적'을 세운 개인에 한해 추천 가능하며, '단기 공적'인 경우에는 표창 중심으로 추천

구분	훈장	포장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추천대상 수공기간	15년 이상	10년 이상	5년 이상

- 심사기준 : [붙임1] 정부포상 심사 기준
- 추천제한 : [붙임2] 재포상 금지 및 포상 제한 규정

### Ⅲ. 제출 방법 및 행정사항

#### 1 후보자 추천 시 유의사항

- 수공(공적)기간 및 연령 등의 작성기준 시점은 '26. 7. 3일 기준으로 작성
- 제출서류 작성 시, “추천 시 유의사항”, “작성 시 참고사항” 등 반드시 숙지하여 작성
- 지정된 서식(※서식 변경금지)에 작성하고 접수기일 준수
- 수공기간, 과거 포상기록, 공적내용, 개인정보(주소, 소속, 주민번호) 등이 누락 또는 허위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
  - ※ 누락 또는 허위 기재로 인해 추천 심사에 제외되는 등 불이익은 추천기관 및 후보자 본인에게 있음
- 추천 단체·기관에서는 추천된 자가 반드시 포상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야 함
- 또한, 추천기관은 정부포상 추천대상자에게 질병관리청 누리집 및 대한민국 상훈 누리집 등에 대상자의 소속, 성명, 추천예정 훈격, 주요공적 등을 15일 이상 공개하여 국민들로부터 의견 수렴함을 반드시 고지
- 포상대상자 추천 시 공적내용의 진실성과 적격성, 객관적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범죄조회 등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
- 추천기관에서는 포상 훈격(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을 정하여 추천, 다만 포상심사 과정에서 포상 훈격 조정 가능

## 2

## 제출 서류

- (제출자료) '[별첨] '26년 희귀질환 극복의 날 유공 제출자료 안내서' 중 해당 구비서류 제출

구분	작성 요령									
<b>&lt; 공통 제출 서식 &gt;</b>										
① (서식1) 포상대상자 명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천대상자 명단은 훈격별, 추천순위별로 작성</li> <li>○ 소속, 직위(직급) 및 성명은 포상 및 표창장에 표기되므로 정확하게 기재</li> </ul>									
② (서식2) 공적요약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적개요는 모든 공적을 반드시 100자 이내로 요약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 기여함(헌신함, 공헌함, 공적이 있음 등)"으로 끝맺음</li> </ul> </li> <li>○ 공적기간은 추천접수 마감일('26.7.3.) 기준으로 산정</li> <li>○ 단체 또는 단체의 임원은 사업자등록번호 및 법인번호 반드시 기재</li> </ul>									
③ (서식3) 공적조서 ※ 개인용, 단체용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명란의 한자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li> <li>○ 주요 경력란의 기간과 과거 포상기록란의 포상 일자의 연월일 표기를 정확히 기재</li> <li>○ 공적 내용은 육하 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상세하게 작성(반드시 2,000자 이상 작성)</li> <li>○ 해당란을 정확히 기재하고 조사자 및 추천관(기관장 확인)의 직인을 날인하여 PDF 제출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 <p>&lt; 추천기관의 조사자 및 추천관 &gt;</p> <table border="1" style="margin: auto;"> <thead> <tr> <th>구분</th> <th>기관 및 단체</th> <th>시.도</th> </tr> </thead> <tbody> <tr> <td>조사자</td> <td>인사담당관</td> <td>소관 과장</td> </tr> <tr> <td>추천관</td> <td>기관.단체장</td> <td>시.도지사</td> </tr> </tbody> </table> </div> </li> </ul>	구분	기관 및 단체	시.도	조사자	인사담당관	소관 과장	추천관	기관.단체장	시.도지사
구분	기관 및 단체	시.도								
조사자	인사담당관	소관 과장								
추천관	기관.단체장	시.도지사								
④ (서식4)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천대상자의 훈격에 관계없이 <u>모두 작성</u></li> <li>○ 직인.서명 날인된 PDF 제출</li> </ul>									
<b>&lt; 해당하는 경우 제출 &gt;</b>										
⑤ (서식5) 현지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천대상자가 <b>'민간인', '민간단체'인 경우 작성</b></li> <li>○ 최초 공적조사기관 및 단체에서 현지조사를 철저히 실시한 후 기명 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지 확인자는 공적조서 추천자와 동일인이어야 함</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확인자는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품성(도덕성 흠결여부 등), 지역여론(공사생활 등), 공적사항(공적내용과 일치여부)</li> <li>- 과거포상경력(장관표창 이상만 기록)</li> </ul> </li> <li>○ 직인·서명 날인된 PDF 제출</li> </ul>
⑥ (서식6) 산업재해 및 임금체불 조회 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천대상자가 <b>사업장·법인·단체 등 또는 사업장의 대표자 및 임원(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 소장 등)의 경우에만</b>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재해, 공정거래, 근로기준법 관련 추천제한 여부 확인용으로 해당사항을 모두 기재</li> </ul> </li> </ul>
⑦ (서식7) 건강보험 허위·부당 청구 조회 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천대상자가 <b>의료인, 의료기사에</b> 해당하는 경우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법 제2조 및 의료기사법 제2조</li> </ul> </li> </ul>
⑧ (서식8) 의료관계 행정처분 여부 조회 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천대상자가 <b>의료인, 의료기사에</b> 해당하는 경우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법 제2조 및 의료기사법 제2조</li> </ul> </li> </ul>
⑨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사본, 별도첨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체, 대표자 및 임원을 추천하는 경우 제출</li> </ul>
기타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식 변경 금지</li> <li>○ 수공기간, 연령 등의 작성기준 시점은 <b>2026. 7. 3. 기준</b></li> <li>○ 기관명 및 직위·직급은 반드시 정식명칭 사용</li> <li>○ 작성양식에 맞지 않거나 공적조서 등 해당분야 공적 작성시 내용이 현저하게 부실할 경우 포상심의 과정에서 제외될수 있음에 유의</li> <li>○ 날인 또는 직인이 있는 서류인 경우 <b>원본을 스캔한 파일(PDF 등)을</b> 제출(공적조서, 정부포상 동의서, 현지 확인서, 훈장 후보자 공적 확인서)</li> </ul>

### 3 | 제출처

□ (접수방법) '26. 7. 3.(금) 18시까지 온나라 공문(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과)으로 추천·제출

\* 온나라 공문 수발신이 어려운 경우 이메일(youhyun02@korea.kr)로 제출

○ (접수기한) '26. 6. 15.(월) ~ '26. 7. 3.(금) 18시까지

※ 담당자 연락처 : 043-719-8781 또는 youhyun02@korea.kr

# 붙임1

## 정부포상 심사 기준

※ 2026년 정부포상 업무지침의 정부포상 심사지표 모델(안) 반영

### □ 공통지표(40%)

지표명	지표의 정의	점수	측정방법
국가발전 기여도	심사대상자(개인, 집단)의 공적이 국가 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된 정도	10	심사자의 점수부여(0~10점)
국민생활 향상도	심사 대상자의 공적이 국민생활(삶의 질) 향상에 미친 긍정적 영향의 정도	10	상동
고객 만족도	심사대상자의 공적이 외부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한 정도	10	상동
창조적 기여도	심사 대상자의 공적이 국가 제도, 사회 관행, 행정 관례, 기업 운영 관행 등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데 기여한 정도	10	상동
합 계		40	

### □ 특성지표(60%)

지표명	지표의 정의	가중치	측정방법
공적기간	당해 분야(희귀질환 관리)에서 종사한 경력의 연수	10	- 20년 이상 ..... 15점 - 15~20년 미만 ..... 12점 - 10~15년 미만 ..... 9점 - 5~10년 미만 ..... 6점 - 3~5년 미만 ..... 3점
업적도	당해분야(희귀질환 관리)의 필수적인 실적정도 및 업적 수준	15	심사자의 점수부여(0~15점)
기여도	당해분야(희귀질환 관리) 발전에 기여한 정도	15	심사자의 점수부여(0~15점)
난이도	업적을 달성하기에 어려운 정도 (전문성, 노력, 전략, 열악한 환경 조건 등)	5	심사자의 점수부여(0~5점)
평판도	당해분야(희귀질환 관리) 종사자 집단에 의한 평판 및 지지의 정도	5	상동
인지도	공적에 대한 국민 및 언론의 인지정도	5	상동
창조도	당해분야(희귀질환 관리)의 패러다임 변환정도	5	상동
합 계		60	

## 1 재포상 금지 기간

\* 수여일로부터 추천 마감일('26.7.3.) 기준

-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 분야에 관계없이 일정 기간동안\*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

\* 기존 포상을 받은 시점(수여일)에서 훈장을 받으려는 자는 7년, 포장은 5년, 표창은 3년이 지나야 추천(추천일)될 수 있음(모범공무원의 경우도 표창과 같이 3년 적용, 단체표창은 제외)

※ 다만, 퇴직포상을 받을 경우 및 정부시상은 재포상 금지기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또한, 퇴직포상을 받은 이후에 다른 분야의 공적으로 정부포상에 후보자로 추천되기 위해서는 퇴직포상을 받았을 때 인정된 공적과 별도로 훈장 15년, 포장 10년, 표창은 5년 이상의 해당 분야의 수공기간이 필요함

## 2 포상 제한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한 유공으로 다시 단체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한 표창은 재포상 금지 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훈·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표창(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 내에서 동일한 종류의 표창이나 하위 등급의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퇴직포상을 받을 시에는 재포상 금지 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재직 중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퇴직 시 동일 종류의 동급 또는 하위 등급의 훈·포장 및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 일반 국민 포상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 형사처분
  -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추천 가능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

-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 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단체는 추천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 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 - 사업보고서 -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만, 상기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 최근 2년 이내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와 관련하여 최근 2년 이내 현지조사를 받고,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강보험 요양기관과 그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 처분이 진행 중(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때)인 경우에는 요양기관 및 그 임원 등에 대한 자체공적 심사 시 총점의 5%내지 10% 범위 내에서 감점함
  - ‘임원 등’은 대표, 원장, 부원장 등 기관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함
- 질병관리 주요정책·사업과 관련된 평가 결과가 저조한 경우
  - 질병관리청에서 추진 중인 주요 정책·사업의 평가 결과가 저조하거나 부적절한 기관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미가입한 경우
  -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업장과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 단체 포상 (대통령 · 국무총리표창 해당)

- 2년 이내에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한 표창은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단체
- 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고발·과징금 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단체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가 제공된 체불사업장
  - ※ 각각의 포상추천 제한 세부기준은 일반국민 포상 추천제한 기준과 동일
-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단체
  -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s://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 ※ 단, 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비과세기관이므로 체납조회 불필요
- 수사 중이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언론보도,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단체
-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단체
  - 최근 2년 이내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단체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와 관련하여 최근 2년 이내 현지조사를 받고,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강보험 요양기관과 그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 처분이 진행 중(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때)인 경우에는 요양기관 및 그 임원 등에 대한 자체공적 심사 시 총점의 5% 내지 10% 범위 내에서 감점함
- ‘임원 등’은 대표, 원장, 부원장 등 기관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함
- 질병관리 주요정책·사업과 관련된 평가결과가 저조한 경우
  - 질병관리청에서 추진중인 주요 정책·사업의 평가 결과가 저조하거나 부적절한 기관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미가입한 경우
  -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업장과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부적합한 경우

※ 정부포상 후보자의 추천제한 사유는 질병관리청에서 일괄 확인 예정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포함) 및 그 임원, ▲임금체불 명단공개 또는 체불사업주,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여부, ▲의료관계행정처분 전력 조회,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 가입 여부)